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수혜자의 요건 확인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자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8. ~ 2020. 7. 20.)
3) 규제대상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에 따른 손해행위 취소에 관한 자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자료 요청) ①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 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자료 요청) ① ----- ----- ----- ----- ----- ----- ---
1.~8의2. (생략)	1.~8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9.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에 따른 손해행위 취소에 관한 자료
9. (생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대학재정장학과	
연 락 처	(044) 203 - 6619